##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15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오세희·이훈기·이기헌

조인철 • 황명선 • 박정현

민병덕 · 김원이 · 김한규

이용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수탁기업은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 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연동을 기피하기 위하 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수탁·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 탁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 등을 제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하여 수탁·위탁거래를 여러 차례 나누어 위탁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1조).

#### 법률 제 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가격이"를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경비가"로 한다.

12의2. "주요 에너지경비"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에너지 요금을 말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조정요건"을 "주요 에너지경비, 조정요건"으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위"를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동일한 물품등의 제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에 나누어 동일한 수탁기업에 위탁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각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제2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나. 각 납품대금이 제2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등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고 지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 유도하는 행위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요 에너지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 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12의2. "주요 에너지경비"란 수</u>
	<u>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u>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에
	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에 대한 요
	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
	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
	요금을 말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13
원재료의 <u>가격이</u> 위탁기업과	<u>가격 또는 주요</u>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	<u>에너지경비가</u>
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	
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	
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	

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 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5. (생략)
- ②・③ (생략)
-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u>행위</u>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u>.</u>		
1. ~ 3. (현행과 같음)		
4		
주		
요 에너지경비, 조정요건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l><li>4)</li></ul>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		
<u>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u>		
1 도이치 므프드이 게지르 저		
1. 동일한 물품등의 제조를 정		
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에		
나누어 동일한 수탁기업에 위		
탁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		
<u>하는 행위</u>		
<u>가. 각 수탁·위탁거래의 기</u>		

	간이 제2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각 납품대금이 제21조제3
	<u>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u>
<u>&lt;신 설&gt;</u>	2. 수탁ㆍ위탁거래의 정지 등
	<u>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u>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납품대
	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u>행위</u>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